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4. 10 선고 2017가단1795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18. 3. 13.

판결 선고2018. 4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9. 4. 24. 접수 제18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이 법원이 2017카정17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. 8. 8.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창형

별지